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0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안 제44조의2 제4항)	3
2.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0.

다.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등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도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70조).

Ⅲ. 검토의견

1.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안 제44조의2 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44조의2 제4항)¹⁾.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u>30일</u> 이내로 한다.	④ ----- ----- ----- ----- ----- ----- -----, ----- <u>60일</u>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1)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3 제2항은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 제4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도 60일 이내로 연장됨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²⁾, 권리침해정보로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⁴⁾.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음(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임의의 임시조치)⁵⁾.

2)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4)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장 30일인 임시조치의 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된 권리침해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정보통신망법이 임시조치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수의 사업자들이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로 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한 게시물을 재게시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권리침해정보 차단 효과는 실질적으로 현행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네이버	203,838	296,058	315,720
다음	28,240	22,498	24,732
네이트	1,141	828	1,061
계	233,219	319,384	341,513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조치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소명만으로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 없이 임시조치 기간을 단순 연장

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소명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임시조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 주장자의 인격권에 기울어진 제도로, 현재 임시조치의 법령상 요건이나 이의제기 절차 등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임시조치의 대상 정보나 기간을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권리침해 여부의 확정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법원의 재판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현행 임시조치가 소비자 후기 등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어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문제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임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고려할 때⁶⁾,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상향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안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안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제70조(벌칙) ① ----- ----- -----

6) 헌법재판소 2020. 11. 26 자 2016헌마275 606, 2019헌마199(병합) 결정

현행	개정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u>5년</u> ----- <u>5천만원</u>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u>7년</u>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u>10년</u> ----- ----- <u>1억원</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⁷⁾.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7)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⁸⁾.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러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⁹⁾.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구분	사실적시	허위사실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 등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 8)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사실적시	허위사실
의한 명예훼손	만원 이하 벌금	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반복·재생산됨에 따라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획득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 유튜버는 관련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 유명인의 사건사고 또는 의혹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인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 일명 ‘사이버 렉카’ 등 일부 유튜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의 몰수·추징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함께 「형법」과의 정합성 문제,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미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만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국 입법례＞

국가	구성요건	법정형
독일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유포한 자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공연성이 있거나 문서의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신용을 위해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공연성이 있거나 집회·문서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프랑스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배포물, 현수막·게시물, 전자적 방식의 공중통신 수단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12,000유로의 벌금
		(출신·소속이나 민족·국가·인종·종교를 사유로 하는 경우) 1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의 형벌
일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만 지나치게 높은 형을 규정하는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과의 법적 균형,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법적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정안의 처벌 수위가 기존의 형량 체계와 비교할 때 과도하고 다른 중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이미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몰수·추징 등을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 다수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230

10) 제2202372호(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제2202403호(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제2202475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제2202842호(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제2204842호(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제2208271호(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제2208838호(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제2209282호(고동진의원 대표발의)